

##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회부일자 : '96. 4. 16. 화순군수

나. 상정일자 : '96. 4. 29. (제44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과장 송기채

나. 제안이유

- 농어촌 정비법이 기존 농촌근대화 촉진법상 관련 법규를 흡수 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 맞추어 자구 및 관련 조례를 정비함.  
(농어촌 정비법 제2조 및 부칙제6조)

다. 주요내용

- 농촌근대화 촉진법상 관련법규가 농어촌 정비법으로 흡수제정 됨에 따라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로 하며 "농지 개량시설"을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하고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법규정에 맞게 정비함.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근성)

- 동 조례개정안은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규가 농어촌 정비법으로 흡수제정 시행됨에 따라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 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4. 질의 답변요지

" 생략 "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 년월일 : 1994. 4.

제출자 : 화순군수

## 1. 제안이유

- 농어촌정비법이 기존 농촌근대화촉진법상 관련 법규를 흡수 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 맞추어 자구 및 관련 법조항을 정비 하고자 함.

## 2. 개정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부칙제6조

## 3. 주요골자

-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를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로 하며 ".농지개량시설" 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하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을 "농어촌정비법" 으로 법규정에 맞게 정비

##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목적) "농지개량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제2조 (정의)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 목에 규정한시설"을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규정한 시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문 대비표